공고 제 2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05월 10일

금성면장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문**	문** 1965-03-08	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-03-23